

# 심사보고서

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 
「지방의회법」 제정 촉구 건의안

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「지방의회법」 제정 촉구 건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52
----------	-----

2025. 4. 30.(수)  
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11인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1일

-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박지현 의원)

## 3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는 헌법을 근거로 설치된 헌법기관이며, 주민의 대표기관, 입법기관, 지방행정의 통제 및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고,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왔음

- 지난 2021년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이 일부 확보되었으나,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
-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고,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
- 이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의 입법적 근거와 「국회법」에 준하는 기본법 형태의 지방의회 업무, 조직, 운영 등 지방의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「지방의회법」의 제정은 필연적임

#### 4. 발송처

대통령(권한대행), 국회의장, 각 정당 대표(국민의힘, 더불어민주당, 조국혁신당, 개혁신당, 진보당, 기본소득당, 사회민주당), 대한민국 국회(교섭단체 원내대표,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), 행정안전부장관(직무대행)

#### 5. 검토의견

-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,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,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역할이 강화된 반면, 이를 제대로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
-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전면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에는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요구해 왔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일부 포함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

○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독립된 예산편성 권한과 자율적 조직구성 권한이 없는 등 현재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.

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함

○ 본 건의안은 올바른 지방자치제도 확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「지방의회법」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**6. 토 론 : 생략**

**7. 토론요지 : 없음**

**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: 없음**

**10. 기타사항 : 없음**

##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「지방의회법」 제정 촉구 건의안

충청북도의회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「지방의회법」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

「대한민국헌법」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.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를 근거로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기관입니다.

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30여 년간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의 입법기관으로, 지방행정을 감시 및 감독하는 통제 기관이자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.

지난 2021년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일정 규모의 전문인력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이 일부 확보되었습니다.

그러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의 견제·감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

지방의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의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 없이는 완전한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,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권과 예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게 하는 현실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.

국회의 경우 「국회법」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을 통해 입법활동, 예산 심의, 행정감시 등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

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.

따라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「국회법」에 준하는 기본법 형태의 지방의회 업무, 조직, 운영 등 지방의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「지방의회법」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입니다.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,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, 「지방의회법」 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.

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이 포함된 「지방의회법」의 조속한 제정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.

하나,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「지방의회법」을 제정하라!

하나,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「지방의회법」을 연내 처리하라!

2025. 4.

충청북도의회